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본문 중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을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본문 중 “3년간”을 “3년간(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서류는 7년)”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서면

별표 제2호가목1) 마)의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u>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5조의4(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 ----- <u>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류의 비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서류의 비치)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서면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u>3년간</u> 비치하여야 한다.	② ----- ----- 3년간(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서류는 7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점의 부과기준(제5조의4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별점"이란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의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별점에서 제3호에 따른 별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별점을 부과하려는 범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 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별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부과기준

가. 별점은 1)의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2)의 시정조치 유형별 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별점만 반영하되, 2)의 라)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가)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3항 위반행위
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마) 기술자료 관련 위반	<u>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u>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
바)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2) 시정조치 유형별 별점기준

시정조치 유형	별점
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법 제27조제2항 본문·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법 제27조제3항·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나.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에서 결정되는 별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에는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라. 제3호가목4)에 따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별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3. 별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2)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4)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기본점수

(1) 수탁·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나) 추가점수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인상반영률} = \frac{\text{위탁기업이 인상한 금액}}{\text{수탁기업이 인상을 요구한 금액}} \times 100$$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 = \left(\text{품목별 인상 반영률} \times \frac{\text{품목별 납품물량}}{\text{조정을 신청한 전체 품목의 납품물량}} \right) \text{의 합계}$$

나. 가목에 따른 별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